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4회 임시회(2023. 10. 17.)

2023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2023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##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3-135
----------	--------

### 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환경국)

나. 제 출 일 : 2023. 9. 26.

다. 회 부 일 : 2023. 10. 6.

### 2. 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가. 세입예산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	증감률
총 계	19,845,083	19,845,083	0	0 %
일반회계	16,302,045	16,302,045	0	0 %
특별회계	3,543,038	3,543,038	0	0 %

나. 세출예산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	증감률
일반회계	81,561,880	77,048,577	4,513,303	5.85 %
인건비	13,616,612	13,616,612	0	0 %
물건비	7,525,186	7,525,186	10,000	0.13 %
경상이전	47,504,483	43,004,483	4,500,000	10.46 %
자본지출	11,609,603	11,609,603	0	0 %
예비비및기타	1,305,996	1,305,996	3,303	0.25 %

### 3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

#### 가.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계	81,561,880	77,048,577	4,513,303	5.86 %
주택상생과	2,405,988	2,395,853	10,135	0.42 %
자원순환과	60,097,378	55,597,378	4,500,000	8.09 %
도시계획과	1,973,820	1,973,820	0	0 %
건축지원과	419,494	419,494	0	0 %
맑은환경과	2,211,127	2,211,127	0	0 %
공원녹지과	14,454,073	14,450,905	3,168	0.02 %

#### 나. 특별회계 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

#### 가. 일반회계(증·감액 및 신규사업)

(단위:천원)

부서·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
주택상생과	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	568,653	558,653	10,000
	일반운영비	25,440	15,440	10,000
	사무관리비	25,440	15,440	10,000
	1)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	10,000	0	10,000
	2)관리실태 감사 전문가 수당	10,000	0	10,000
자원순환과	폐기물 처리	37,871,711	33,371,711	4,500,000
	민간이전	11,980,522	7,480,522	4,500,000
	민간위탁금	11,980,522	7,480,522	4,500,000
	1)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	4,500,000	0	4,500,000

#### 나. 국비 및 시·도비 반환금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·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
주택상생과	반환금기타	3,362	3,227	135
	시·도비보조금반환금	3,362	3,227	135
	1)2022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	135	0	135
공원녹지과	반환금기타	44,832	41,664	3,168
	국고보조금반환금	18,033	16,101	1,932
	1)2021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(추가)	300	0	300
	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경상보조	1,565	0	1,565
	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자본보조	67	0	67
	시·도비보조금반환금	26,799	25,563	1,236
	1)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 집행잔액 및 이자(추가)	670	0	670
	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경상보조	472	0	472
	1)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자본보조	20	0	20
	1)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집행잔액	21	0	21
1)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이자	53	0	53	

## 5. 검토결과

### 가. 예산규모

- 2023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.
-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0억4,857만7천원에서 5.86%, 45억1,330만3천원 증액된 815억6,188만원임.

### 나.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- 주택상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3억9,585만3천원에서 0.42%, 1,013만5천원 증액된 24억598만8천원으로,
  -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으로 1,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,
  - 2022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시·도비보조금 반환금 13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.
-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55억9,737만8천원에서 8.09%, 45억원 증액된 600억9,737만8천원으로,
  - 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금으로 45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.
-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4억5,090만5천원에서 0.02%, 316만8천원 증액된 144억5,407만3천원으로,
  - 편성내역은 국·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,

- 2021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(국고보조금)	300천원
- 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 경상보조(국고보조금)	1,565천원
- 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 자본보조(국고보조금)	67천원
-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(시·도비보조금)	670천원
- 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경상보조(시·도비보조금)	472천원
- 2021년 산림재해일자리(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)자본보조(시·도비보조금)	20천원

- 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집행잔액(시·도비보조금) 21천원
  - 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이자 (시·도비보조금) 53천원
- 이 증액 편성되었음.

## 6. 검토의견

- 2023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주택상생과 ‘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사업’ 과 자원순환과의 신규사업인 ‘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사업’ 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, 기타 지난 국·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으로 증액 편성함.
- ‘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사업’ 은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, 상·하반기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민 민원에 따른 수시 감사요청이 빈번히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특별감사에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,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.
-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본사업의 증액 편성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,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외부인에게 점검 받게하는 것은 점검내용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공동주택 감사실적 및 반복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후 벌칙성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해 보임.
- 아울러, 연간계획을 철저히 하여 추경의 예측불가능성에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겠음.
- ‘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사업’ 은 홍대관광특구 구성에 따

라 청소분야 개선대책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상시 수거체제로 운영하고자 4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.

- 본 사업의 증액 편성 목적은 홍대 Red Road의 세계적 명소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미관 저해 및 방문자 불편사항 발생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 일환으로 서교동, 동교동, 합정동 일부지역과 홍대 관광특구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권역을 개편 <표 1.>하여 소형 상가가 밀집한 홍대관광특구 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.

<표 1. 대행업체 권역변경(안) >

구 분	현 행	조 정 (안)
1권역(평화)	공덕, 도화, <b>舊 서교</b>	공덕, 도화, <b>용강</b>
2권역(대경)	성산2, 상암, <b>서강, 합정</b>	성산2, 상암, <b>서강, 합정</b>
3권역(효성)	대흥, 신수, <b>舊 동교</b> , 연남	대흥, 신수, 연남
4권역(케이제이로지스)	아현, <b>용강</b> , 염리, 망원1·2, 성산1	아현, 염리, 망원1·2, 성산1
5권역(홍대특별권역)		<b>서교(舊서교·동교), 서강·합정 일부</b>

- 또한 기존 수거체계를 상시 수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기존 일 1회에서 일 3회로 늘리고 배출요일을 상시로 하는 <표 2.>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지적되던 홍대지역 생활폐기물 미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거체제 개선 방식은 도시미관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수거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 모두에게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행정편익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, 향후에는 마포구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

지역별 공평한 방식과 혜택을 주민에게 보장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심이 아닌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임.

<표 2.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(상시 수거체계 운영)>

구 분	배출요일	배출시간	수거시간
변 경 전	일, 월, 화, 수, 목요일 (금, 토요일 제외)	18:00~24:00(하계) 19:00~24:00(동계)	22:00~06:00
변 경 후	일요일 ~ 토요일 (상시수거)	05:00~09:00 12:00~15:00 19:00~24:00	07:00~15:00(주간) 22:00~06:00(야간)

- 아울러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르면 “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상 요건 외 일반적인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경안의 편성요건은 목적 적합성, 예측불가능성, 보충성, 시급성, 연내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어짐.
- 하지만,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이 발생할 것이 분명함.
-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경비의 성질이 사업 상당 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지출을 못한다든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지출을 완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,
-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명시이월을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 관리가 복잡해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며, 의회 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.
- 또한, 대행계약의 연내 불성립 등을 고려하여 심사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

「지방재정법」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겠음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문위원	신 준 호
주무관	박 철 호

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## 「지방재정법」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